글꼴파일 저작권 가이드



글꼴 파일 저작권 가이드

서문

디지털 콘텐츠 창작이 보편화됨에 따라 글꼴(폰트)은 우리 일상과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꼴의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과 상담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꼴 저작권 분쟁의 대부분은 눈으로 보는 '글자체(서체 도안)'와 컴퓨터에 설치되는 '글꼴 파일(소프트웨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본 가이드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글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글꼴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라이선스의 유형, 저작권 침해와 라이선스 위반의 구별, 그리고 내용증명 수신 시의 단계별 대응 방안과 예방 가이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는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최근 3년간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분쟁 유형과 쟁점을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자료가 기업 및 공공기관 실무자와 개인 창작자 모두에게 글꼴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핵심 요약

1 글꼴 저작권의 기본 개념

1.1. '글자체(서체 도안)'와 '글꼴 파일'의 구분 17
_1.1.1. 글꼴 파일(폰트 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 18
_1.1.2. 글자체(서체 도안)는 저작권 보호 안됨 18

1.2. 글꼴 파일의 저작자와 저작권 21
_1.2.1. 글꼴 파일의 저작자 21
_1.2.2. 글꼴 파일 저작자의 권리 22
(1) 저작재산권 22
(2) 저작인격권 24

2 글꼴 파일의 라이선스

2.1. 라이선스의 의의와 유형 27
_2.1.1. 라이선스의 의의 27
_2.1.2. 라이선스의 유형 27
(1) 일반 상업용 라이선스 27
(2) 번들(Bundle) 라이선스 27
(3) 개인용 무료 라이선스 27
(4) OFL 27
(5) 공공누리 28

2.2.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과 쟁점 29
_2.2.1. 사용 주체 29
(1) 개인 29
(2) 기업 및 영리 단체 29
(3)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29
(4) 외주 용역 및 디자인 업체 30
_2.2.2. 사용 목적과 범위 30
(1) 비상업적 이용 30
(2) 상업적 이용 30
_2.2.3. 사용 매체 31
(1) 인쇄물 매체 31
(2) 온라인 및 디지털 매체 31
(3) 임베딩(Embedding) 매체 32
(4) 영상/스트리밍 매체 33
(5) 상표 관련 매체 33

3 분쟁의 유형과 주요 쟁점

3.1. 저작권 침해와 라이선스 위반 37
_3.1.1. 저작권 침해 37
_3.1.2. 라이선스(계약) 위반 37

3.2. 글꼴 파일의 배포 경로 39
_3.2.1. 번들 글꼴 39
(1) 번들 글꼴의 주요 허용 범위 40
(2)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40
(3) 쟁점 사례 40
_3.2.2. '무료' 글꼴 41
(1) 무료 글꼴의 주요 허용 범위 41
(2)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 42
(3) 쟁점 사례 42
_3.2.3. 불법 취득 글꼴 44

3.3. 글꼴 파일의 사용 매체 45
_3.3.1. 온라인 매체 45
(1) 이미지 및 영상 파일 (유튜브 썸네일, 웹사이트 배너 등) 45
(2) PDF 임베딩 46
_3.3.2. 오프라인 인쇄물 및 광고 (간판, 상품, 포장재) 47
_3.3.3. CI/BI 및 로고 (Corporate/Brand Identity & Logo) 48

3.4. 계약 및 고용 관계에서의 책임 소재 48
_3.4.1. 행위자 책임 원칙과 고객의 책임 여부 48
_3.4.2. 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48

4 대응 전략 및 예방 가이드

4.1.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매뉴얼 53
1단계: 사실관계 확인 53
2단계: 법적 타당성 검토 53
3단계: 대응 전략 수립 54

4.2. 합의와 조정 55
_4.2.1 합의금의 수준 55
_4.2.2.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 활용 56

4.3.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 57
_4.3.1. 기업 및 공공기관 57
(1) 폰트 관리 정책 수립 및 정기 점검 57
(2) 외주 계약서 관리 58
_4.3.2. 개인 이용자 60
(1) 안전한 다운로드 경로 이용 (공유마당, 공공누리 활용) 60
(2) OS 기본 서체 및 번들 서체의 사용 60
(3) 특별한 폰트 파일의 사용 시 라이선스 확인 습관 60
_4.3.3. 안전한 글꼴 소스 활용 61
(1)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안심글꼴파일 61
(2) 공공누리 안심글꼴파일 61

[부록] 글꼴 저작권 실무 Q&A

[폰트 파일의 설치와 저작권의 보호대상] ····· 65
Q1. 글꼴(폰트)의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글자 모양인가요? ····· 65
Q2.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무료 폰트 모음'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써도 되나요? ····· 65
Q3. 중고 컴퓨터를 샀는데 이미 유료 폰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대로 써도 되나요? ····· 65
Q4. 폰트 파일명을 바꾸거나 확장자를 변경해서 쓰면 안 걸리나요? ····· 66
Q5. 윈도우 살 때 기본으로 있는 폰트(맑은고딕, 바탕체 등)를 회사 업무에 써도 되나요? ····· 66
Q6. '가정 및 학생용(Home & Student)' 한컴오피스를 회사에서 썼는데, 그 안의 폰트도 문제 되나요? ·· 66

[번들 폰트] ····· 66
Q7. 한컴오피스를 깔 때 설치된 폰트를 포토샵에서 써도 되나요? ····· 66
Q8. 한글과컴퓨터 패키지를 지웠는데 폰트 파일만 남아서 계속 썼습니다. 괜찮나요? ····· 67
Q9. 번들 폰트 파일을 USB에 담아 다른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 67
Q10. MS 워드에서 쓴 글씨를 캡처해서 홈페이지 배너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되나요? ····· 67

[외주 용역 및 디자인 결과물 사용] ····· 67
Q11. 디자인 업체에 로고 제작을 맡겼는데, 폰트 저작권자가 저에게(발주처)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 67
Q12. 외주 업체가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68
Q13.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계약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 68
Q14. 간판을 만들었는데 글씨체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68
Q15. 디자이너가 폰트 파일을 같이 보내줬습니다. 받아서 설치해도 되나요? ····· 68
Q16. 제가 만든 디자인 결과물을 납품할 때, 폰트 파일도 같이 줘야 하나요? ····· 68

[웹사이트, PDF, 임베딩] ····· 68
Q17. 외주 제작된 회사 소개서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폰트 업체가 번들 폰트의 '무단 재배포'라는데요? ····· 68
Q18.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웹폰트(Webfont)를 썼습니다. TTF를 변환해서 서버에 올려도 되나요? ····· 69
Q19. 웹에이전시가 제작해준 홈페이지 폰트가 문제 되었습니다. ····· 69
Q20. 앱(App)을 개발 중인데 폰트 파일을 앱 안에 넣어도 되나요? ····· 69
Q21. 전자책(e-Book/EPUB) 제작 시 폰트는 어떻게 하나요? ····· 69

[온라인 플랫폼 : 유튜브, OO캔버스 등] ····· 69
Q22. OO캔버스에서 만든 썸네일을 유튜브에 썼는데 폰트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 69
Q23. OO캔버스에 있는 예쁜 폰트가 제 컴퓨터에는 없어서 캡처해서 썼습니다. ····· 70
Q24. 유튜브 자막에 무료 폰트를 썼는데 '방송 송출'은 별도 계약이 필요하대요. ····· 70
Q25. OO 플랫폼 무료 사용자인데 상업용 디자인을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 70
Q26. 유튜브 영상 편집자가 불법 폰트를 썼습니다. 채널 주인도 처벌받나요? ····· 70
Q27. 영상 자막이 아니라 영상 속 배경에 찍힌 간판 글씨도 문제 되나요? ····· 70

특수 기술 [3D 프린팅, 자수, AI] ····71
Q28. 3D 프린터로 글자를 출력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인가요? ····71
Q29. 컴퓨터 자수기계에 폰트 파일을 넣어서 이름을 새겨주고 돈을 받습니다. ····71
Q30. 미드저니(AI)가 생성한 이미지 속에 있는 글자(텍스트)는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71
Q31. AI 학습용 데이터로 폰트 파일을 사용해도 되나요? ····71
Q32. 폰트 파일을 수정해서 새로운 폰트를 만들면 제 저작권이 되나요? ····71

[무료 폰트 및 라이선스 해석] ····71
Q33. '개인/기업 무료'라고 해서 썼는데, CI(로고) 제작은 유료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71
Q34.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무료로 받은 폰트인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72
Q35. OO구름 같은 구독형 폰트 서비스를 쓰다가 해지했습니다. 예전에 만든 이미지는 지워야 하나요? ·72
Q36. 폰트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써도 되나요? ····72

[법적 분쟁 대응 및 합의] ····72
Q37.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사과하고 합의해야 할까요? ····72
Q38. 고소당하면 감옥에 가나요? (형사 처벌) ····73
Q39. 합의금이 너무 비싼데 깎을 방법이 없나요? ····73
Q40. 글자를 손으로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73

[일러두기]

'글꼴파일 저작권 가이드'에서는 저작권 관련 법령과 약관(이용계약)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만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이외의 문제인 불법행위(「민법」),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권 침해(「디자인보호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글꼴파일 저작권 가이드'는 글꼴파일 이용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저작권 법률의 이해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가이드 내용은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핵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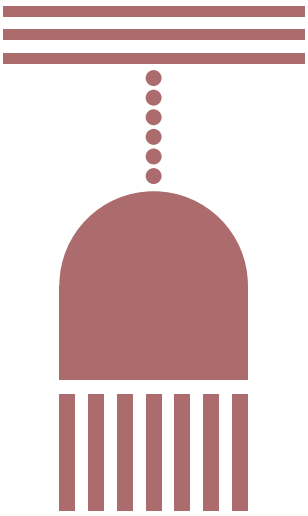

핵심 요약

√글자체와 글꼴파일의 구분

핵심 개념 : 글자체 vs 글꼴 파일

모든 폰트 분쟁은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자 디자인과,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글자체' (서체 도안)

가

정의 : 눈으로 보는 글자의 시각적 디자인

예시 : 명조체, 고딕체 모양 그 자체

보호 여부 :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이유 : 문자의 본래 기능인 '정보전달'이라는 실용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글꼴 파일' (폰트파일)



정의 :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예시 : 'NanumGothic.ttf', 'font.otf'

보호 여부 :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유 : 명령어와 데이터의 집합체인 '소프트웨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대상은 '글자 모양 사용'이 아닌, 폰트 파일(S/W)의 불법 복제 및 배포'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라이선스 위반의 구분

'저작권 침해' vs '라이선스 위반'

파일을 획득한 경로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범위 초과 사용'은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경로 : ✕ 불법 경로 (P2P, 블러그 공유)

행위 :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설치, 복사, 배포

법적 성격 : 형사처벌 대상

책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

'라이선스 위반' (계약 위반)

경로 : ☑ 정당한 경로 (공식 사이트, 번들)

행위 : '개인용'을 '상업용'으로 사용, 번들폰트'를 외부 프로그램에서 사용

법적 성격 :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 :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아님, 민사상 손해배상 (라이선스 비용 등)

√저작권 침해/ 라이선스 위반 여부 판단

저작권 침해/라이선스 위반 자가 진단

화살표를 따라가며 내 상황의 법적 리스크를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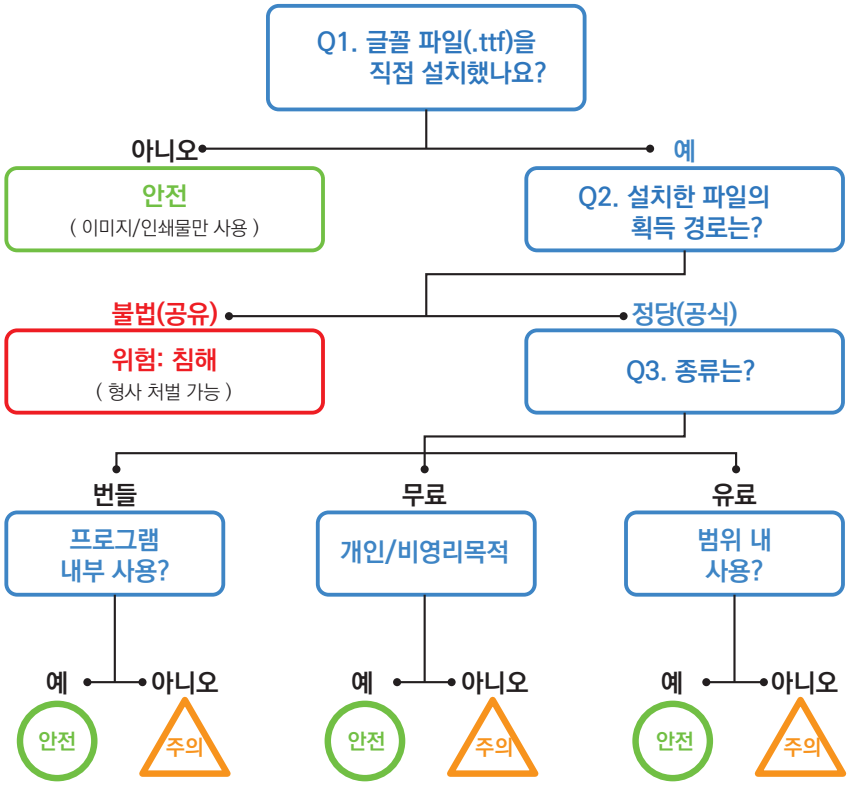

최종 확인 필수

위 결과에서 '안전'이 나왔더라도, CI/BI(로고), 웹폰트, 임베딩(PDF/앱)은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

내용증명 수신 시 대응 순서도

법무법인으로부터 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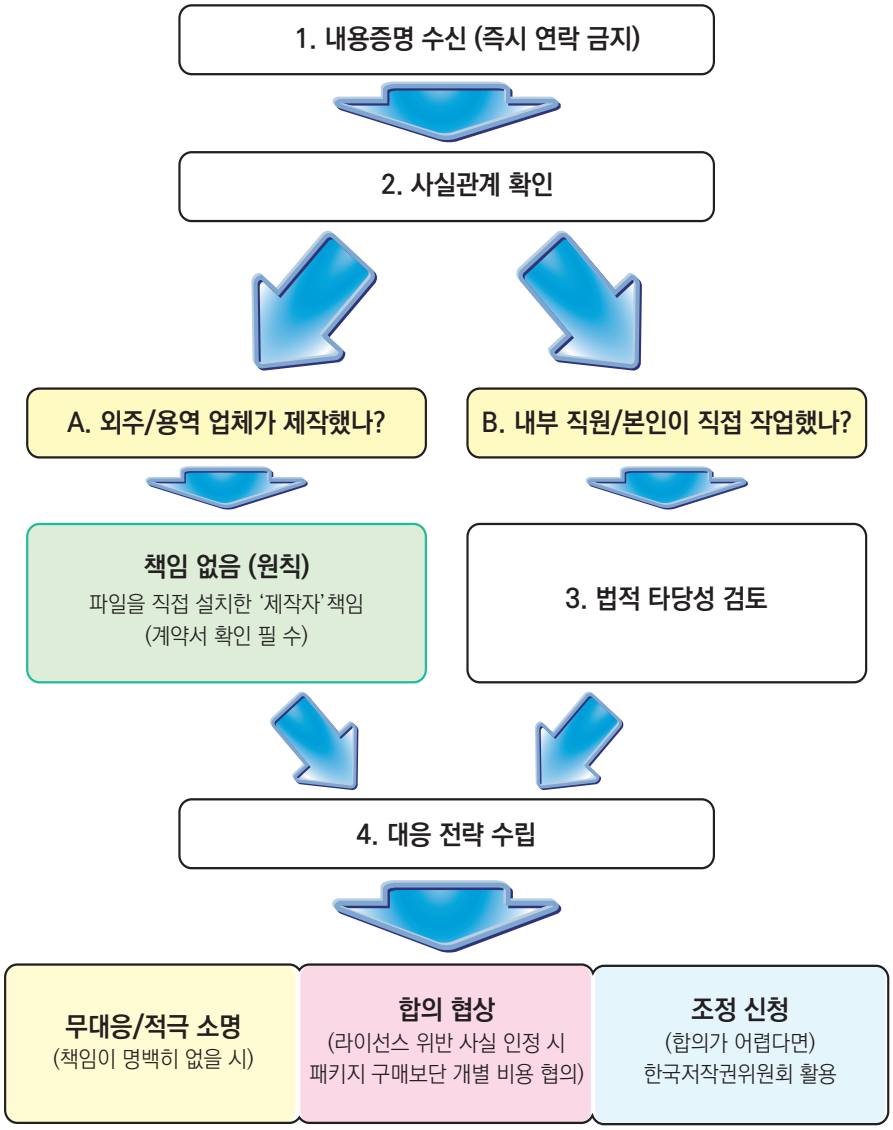

√분쟁 예방 가이드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

가장 좋은 전략은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하세요.



안전한 폰트만 사용하기

기업이나 팀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 목록(예:공공누리 1유형, OFL 폰트 등)을 지정하고, 그 외 폰트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외주 계약서 관리 철저

외주 용역시, “결과물에 사용된 모든 소스 (글꼴 등)의 저작권 책임은 제작자(수급인)에게 있다” 는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합니다.



PC 정기 점검 및 교육

업무용 PC에 라이선스가 불명확하거나 불법 설치된 폰트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삭제하고, 전 직원 대상 저작권 교육을 실시 합니다.

1
글꼴 저작권의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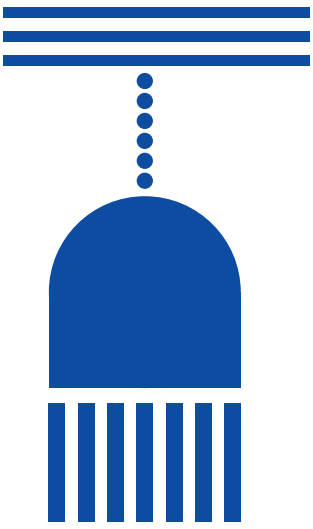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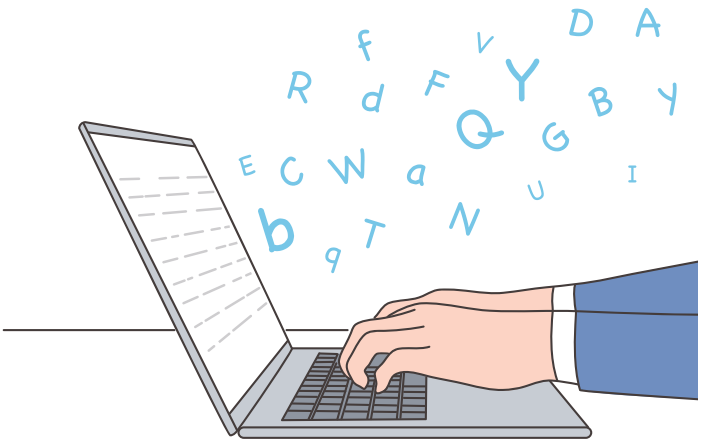

1. 글꼴 저작권의 기본 개념

1.1. '글자체(서체 도안)'와 '글꼴 파일'의 구분

글꼴 저작권에 관한 모든 논의는 우리가 흔히 '폰트'라고 부르는 것을 법적으로 두 가지 개념, 즉 '글자체(서체 도안)'와 '글꼴 파일(폰트 파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법적 보호의 근거와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글자체(서체 도안)는 명조체, 고딕체, 궁서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자의 시각적 디자인 그 자체를 의미한다. 반면 글꼴 파일(폰트 파일)은 이 글자체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실제로 표시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ttf, .otf 등)을 말한다. 이는 특정 서체를 구현하도록 컴퓨터에 지시하는 명령어와 데이터의 집합체이다.

글꼴(폰트) 파일 제작 과정

글꼴 파일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린 그림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1. 디자인 (밑그림 그리기)

디자이너의 스케치: 가장 먼저 디자이너가 종이나 태블릿 위에 '가나다', 'ABC' 같은 글자 모양을 직접 그린다.

원도(原圖): 글자의 굵기나 모양을 일정하게 다듬어서 완성한 이 최초의 디자인을 '원도(오리지널 그림)'라고 부른다.

2. 벡터화 (컴퓨터용 점과 선으로 변환하기)

디지털로 옮기기: 디자이너는 폰트 제작 프로그램(폰토그라퍼 등)을 이용해 앞서 그린 디자인을 컴퓨터로 불러온다.

수학적인 점 찍기: 컴퓨터는 그림을 '점'과 '선'의 좌표로 인식한다. 디자이너는 글자의 곡선이 매끄럽게 보이도록 수많은 점(포인트)을 찍고 위치를 하나하나 조절하여 글자의 윤곽선을 완성한다.

3. 프로그래밍 (보기 좋게 다듬는 명령어 입력)

힌팅 (Hinting = 화면 보정): 해상도가 낮은 모니터에서는 글자가 깨지거나 흐릿해 보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픽셀 칸에 맞춰서 선명하게 보여줘!"라고 컴퓨터에 지시하는 명령어를 넣는다.

커닝 (Kerning = 간격 조정):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A'와 'V'가 만날 때

처럼, 특정 글자들이 나란히 있을 때 사이가 너무 멀어 보이지 않도록 미세한 간격 값을 입력해 준다.

4. 파일 생성 (하나로 포장하기)

최종 완성: 위에서 만든 글자 모양(좌표값), 화면 보정 명령(힌팅), 간격 조정 값(커닝), 그리고 저작권자 정보 등을 모두 모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다.

파일 변환: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ttf나 .otf 같은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내면(컴파일), 비로소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글꼴 파일'이 된다.

주요 글꼴 파일 형식

TTF (TrueType Font): Apple과 Microsoft가 개발한 표준 형식으로, 주로 화면 표시에 최적화된 '힌팅'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OTF (OpenType Font): Microsoft와 Adobe가 개발한 형식으로, TTF보다 더 많은 글자(Glyph)와 정교한 타이포그래피 기능(예: 합자)을 지원한다.

WOFF / WOFF2 (Web Open Font Format):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형식이다. 본질적으로는 TTF나 OTF 파일을 웹 전송에 적합하도록 압축한 파일이며, 이를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이 '웹 임베딩'이다.

1.1.1. 글꼴 파일(폰트 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

글꼴 파일은 특정 글자체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실제로 표시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 파일(.ttf,.otf 등)을 말한다. 법원은 글꼴 파일을 단순한 이미지의 집합이 아니라, 특정 서체를 구현하도록 컴퓨터에 지시하는 명령어, 좌표값, 제어 정보의 집합체로 보았다. 즉, 글꼴 파일의 소스코드는 그 자체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1)]

1.1.2. 글자체(서체 도안)는 저작권 보호 안됨

명조체, 고딕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자의 디자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글자체(서체 도안)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우리 법원은 글자체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그 이유는 글자체의 주된 목적이 문자의 본래 기능인 정보 전달이라는 실용성에 있다고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자체에 포함된 미적 요소가 이러한 실용적 기능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예술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높은 예술성을 갖추지 않는 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2)]

글자체와 글꼴 파일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의자의 디자인 도면(글자체)'과 '그 도면을 바탕으로 의자를 자동으로 생산하는 로봇의 제어 소프트웨어(글꼴 파일)'의 관계와 같다. 의자의 디자인 자체는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가 쉽지 않겠지만, 그 의자를 만들기 위한 정교한 명령어로 구성된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우리가 글꼴 저작권 침해라고 말할 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는 대부분 글자체 디자인을 사용한 행위가 아니라, 글꼴 파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행위이다.

글자체와 글꼴 파일의 비교

구분	글자체 (Typeface/서체 도안)	글꼴 파일 (Font File / 폰트 파일)
정의	명조체, 고딕체 등 눈으로 보는 글자의 시각적 디자인 그 자체 	글자체를 디지털 기기에서 표시·인쇄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파일(.ttf, .otf 등) 
유사 용어	글자체, 글씨체, 글자 모양, 서체, 폰트 도안/이미지 등	글꼴 프로그램, 폰트 프로그램, 서체 프로그램/파일 등
성격	정보 전달의 실용적 기능을 가진 도안	특정 서체를 구현하도록 컴퓨터에 지시하는 명령어와 데이터의 집합체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보호 여부	보호받지 못함 (원칙적 부정)	보호받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적용 법률	디자인보호법 (단, 통상적인 사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저작권법 (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규정)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 상담사례에서 '글자체' 및 '글꼴 파일'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

상담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글자체와 글꼴 파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담관들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고 있다.

가. '글자체(서체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님, 결과물이나 이미지 형태)

- 글자체 / 서체 도안 / 폰트 도안: 가장 법률적인 용어로, 글자의 형상 그 자체를 지칭한다.
- 글씨체: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간판 글씨체', '로고 글씨체' 등으로 표현된다.
- 이미지 / 캡처본 / 사진: 폰트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가 아닌, 그림 파일(JPG, PNG 등)로 저장된 상태를 의미한다.
- 결과물 / 산출물 / 2차 제작물: 외주 업체 등을 통해 제작되어 납품받은 인쇄물, 로고, 이미지 파일 등을 뜻한다.
- 글자 모양: 글꼴의 디자인적 요소를 지칭한다.
- 도안: 글자의 디자인 설계를 의미한다.
- 서체: 문맥에 따라 도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파일을 의미하기도 하나, '서체 사용', '서체 디자인' 등의 맥락에서는 도안에 가깝다.
- 아웃라인(Outline) / 누끼: 글자의 외곽선을 따서 이미지화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프로그램이 아닌 이미지 이용으로 간주된다.

나. '글꼴 파일(폰트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됨)

- 글꼴 파일 / 폰트 파일: 컴퓨터에 저장되는 디지털 파일(.ttf, .otf 등)을 지칭한다.
- 폰트 프로그램 / 서체 프로그램: 기능적 요소를 강조한 용어로, 저작권법상 보호 객체임을 명확히 할 때 주로 사용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식 명칭이다.
- 소프트웨어 (S/W): 폰트를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때 사용된다.
- 설치 파일: 컴퓨터에 설치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 번들 폰트: 한글과컴퓨터(한컴오피스), MS오피스, 윈도우 운영체제 등에 기본적으로 포함(내장)되어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의미한다.
- 소스 코드: 폰트 파일 내부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내용을 지칭하며, 이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등)와 관련된다.

※ 캘리그라피와 서예의 저작물성

일반적인 글자체 디자인과 달리, 작가의 창조적 개성이 뚜렷하게 발현된 캘리그라피나 서예 작품은 독립된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로 표현한 작품을 허락 없이 영화나 광고물에 사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7. 2. 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



출처 : 영화 〈축제〉(1996) 포스터, 여태명 작 '춘향전' 일부(동아일보 1997)

피고 회사는, 소외 1이 제작한 위 포스터 디자인을 채택하여 사용하기로 함에 있어 위 디자인상의 이 사건 글자가 원고의 작품임을 알았음에도 그 사용 승낙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위 글자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글자가 원고의 사용 승낙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항의받고서도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글자를 위 홍보물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에 있어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1.2. 글꼴 파일의 저작자와 저작권

1.2.1. 글꼴 파일의 저작자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된다. 통상적으로 폰트 업체에서 글자체 디자인과 폰트 개발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폰트 업체에 귀속된다.

그런데 글자체 디자인과 폰트 제작의 주체가 다른 경우 최종적인 글꼴 파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부분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글자체 디자인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글꼴 파일의 개발자가 저작자로 인정받게 된다.[3)]

1.2.2. 글꼴 파일 저작자의 권리

글꼴 파일의 저작자는 해당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는다.

(1)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복제권

글꼴 파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정식 라이선스 없이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하는 행위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복제권 침해 사례

서울서부지법 2017. 3. 8. 선고 2016가단240058 판결

OO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4월학년별 과학행사(3학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원고 저작물인 서체 〈봄의왈츠〉를 불법 사용하여 【3학년】이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서울북부지법 2014. 2. 6. 선고 2013가소44356 판결

피고가 그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 및 제품 광고를 위한 소형간판, 보드 등에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PNH 페스티발 서체 폰트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지법 2013. 11. 6. 선고 2013고정1398 판결

OO어린이집 사무실 내에서 폰트회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컴퓨터에서 주식회사 OOOO가 등록한 저작물인 폰트파일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복제한 후 위 어린이집 내 화장실, 언어(책방), 신체활동(놀이시설) 등을 알려주는 폰트를 인쇄하여 영역표시판으로 사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광주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3561판결

광주지법 2014. 1. 24. 선고 2013고정2572 판결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OOO어린이집에서 저작권자인 OOOO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된 저작물인 폰트파일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복제하고, 위 폰트파일프로그램으로 위 어린이집의 졸업식 및 환경조성 행사 등의 표지판을 인쇄한 다음 어린이집 벽면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춘천지법 2016. 1. 21. 선고 2015고정124 판결

피고인은 (주)OOOO에서 OOOO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한글서체를 OOOO의 복제 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상에서 무단 복제하여 홍보영상물제작 등에 사용하여 OOOO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배포권

복제된 글꼴 파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중송신 또는 전송과는 달리) 배포는 유형물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저작자의 허락없이 해당 폰트 파일을 CD나 USB에 담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배포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권리소진 또는 최초판매원칙[4]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폰트 파일의 구매나 다운로드는 해당 파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특정 조건 하에서 글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용허락 계약(라이선스)'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공중송신권

글꼴 파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P2P 프로그램, 웹하드, 또는 파일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공중송신권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고정4272 판결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인 '큐트폰트 (http://www.cutefont.co.kr)' 사이트에 피해자 OOO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PNH복고만화' 컴퓨터 한글서체를 OOO의 복제 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위 서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4)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 3. 31. 선고 2015고정102 판결

피고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저작물인 '평붓.TTF'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6. 8. 24. 선고 2016고정1926 판결

피고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 장터' 및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피고인 운영의 'OO네1호점'에서 피해자 박○○가 개발한 서체 파일 9개를 무단 복제한 다음, '삼성폰트'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 2,000원에 판매하였다.

√대여권

영리를 목적으로 글꼴 파일(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타인에게 유료로 빌려주는 행위는 대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폰트 파일 내부의 코드를 수정하여 새로운 폰트를 제작하는 행위는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공표된 폰트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공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의 코드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2
글꼴 파일의 라이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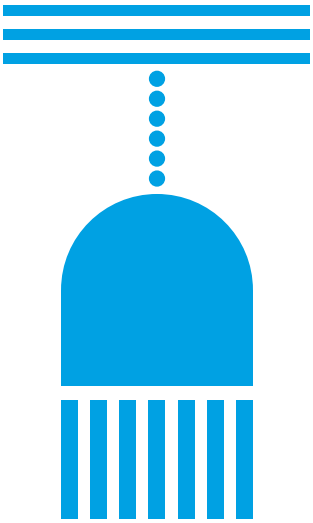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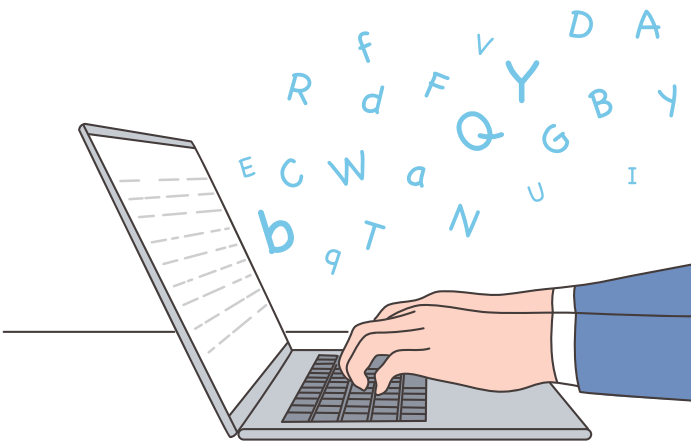

2. 글꼴 파일의 라이선스

2.1. 라이선스의 의의와 유형

2.1.1. 라이선스의 의의

글꼴파일 라이선스란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특정 조건 하에서 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용 허락 계약'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폰트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글꼴파일의 저작권(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라이선스 계약(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글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배포권 등 침해)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

2.1.2. 라이선스의 유형

다양한 글꼴 라이선스가 있지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유형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일반 상업용 라이선스

윤디자인, 산돌구름 등 국내외 폰트 회사가 판매하는 유료 폰트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이다.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라이선스마다 허용 범위가 다양하므로 약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쇄용, 영상용, 웹용 라이선스가 분리되어 있거나, CI/BI 제작, 서버 업로드 등은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 번들(Bundle) 라이선스

Windows 운영체제나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함께 제공되는 글꼴에 적용된다. 이 라이선스의 핵심 원칙은 '해당 소프트웨어 내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무에서는 한컴오피스나 MS 오피스에 포함된 글꼴을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3) 개인용 무료 라이선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많은 무료 폰트에 적용되며,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무료'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료'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기업 활동이나 수익 창출 목적의 개인 활동에 사용했다가 라이선스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는 가장 흔한 분쟁 유형이다.

(4) OFL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방형 글꼴 라이선스이다. 구글 폰트(Noto Sans 등)와 네이버 나눔글꼴 등이 이 라이선스를 따른다. 개인적, 상업적 용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다. 다만, 글꼴 파일 자체를 단독으로 유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수정한 글꼴을 배포할 경우에도 동일한 OFL을 적용하고 원본과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5]

(5) 공공누리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6]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7] 특히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된 글꼴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2차적 저작물 작성)이 모두 자유롭게 허용된다. OFL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유형에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라이선스의 유형]

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상업적 이용, 수정/변경, 재배포, 출처 표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사안별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유형	주요 예시	상업적 이용	수정/변경	재배포	주요 제한사항
일반 상업용 라이선스	윤디자인, 산돌구름 등 유료 폰트	허용 (구매 범위 내)	금지	금지	인쇄, 영상 등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이다.
번들 라이선스	Windows 기본 글꼴,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제공 글꼴	제한적 허용	금지	금지	해당 소프트웨어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 프로그램 사용 시 제한이 가능하다.
개인용 무료 라이선스	각종 폰트 공유 사이트의 다수 무료 폰트	금지	금지	금지	기업, 단체, 수익 창출 목적의 모든 활동에 사용이 불가하다.
OFL	구글 폰트 (Noto Sans), 네이버 나눔글꼴 등	허용	허용	허용(단, OFL 유지)	폰트 파일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공누리 제1유형	서울남산체, 국립공원 반달이체 등	허용	허용	허용	원본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5) https://openfontlicense.org/open-font-license-official-text/ 참조.
6) https://www.kogl.or.kr/info/introduce.do 참조.
7)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List.do?division=font 참조.

2.2.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과 쟁점

라이선스를 확인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조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2.1. 사용 주체

글꼴 파일 라이선스는 폰트를 누가(Who)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체의 성격(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에 따라 사용 범위를 규정한다. 사용 주체에 관한 제한은 폰트의 불법적인 대규모 복제 및 사용을 막고,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무료 글꼴 파일 라이선스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는 사용 주체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개인

대부분의 무료 글꼴은 개인의 비영리적인 목적의 사용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단순 문서 작성, 학교 과제, 개인 블로그 포스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달할 비영리 목적의 인쇄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폰트를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결과물(예: 유료 판매하는 디자인 상품, 개인 사업용 로고 등)을 만들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다.

(2) 기업 및 영리 단체

기업이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업의 활동은 대부분 영리 목적으로 간주되므로, 무료 폰트일지라도 '상업적 이용 가능'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수(Seats)와 관련하여, 라이선스는 보통 최초 구매 시 지정한 사용자 수 또는 설치된 PC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구매한 수량을 초과하여 직원들이 폰트 파일을 공유하고 설치하는 행위는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한다.

회사 로고(CI/BI) 제작은 폰트 제작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를 구매했더라도, CI/BI 사용은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3)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의 활동은 비영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활동이 영리성을 띨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으로 한정된 무료 폰트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내지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용조건 중 "비영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확인하고 무료 폰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비영리" "개인" 조건이므로 "법인"이나 "단체" 소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조건 위반을 주장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외주 용역 및 디자인 업체

디자인 외주 업체는 자신들의 사용과 고객의 사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업체가 자신의 업무용 PC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것은 라이선스 수량 내에서 허용된다. 고객에게 폰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디자인 업체가 구매한 라이선스는 해당 업체의 사용 권한만을 부여하며, 고객에게 폰트 파일 자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무단 재배포로 간주된다. 따라서 고객이 해당 폰트 파일을 사용하려면 고객이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외주 작업의 결과물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는 글꼴 파일 대신 텍스트를 이미지화(아웃라인 처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라이선스 위반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2.2.2. 사용 목적과 범위

글꼴 파일 라이선스는 폰트가 사용되는 궁극적인 활동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이는 폰트 파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크게 비상업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으로 구분하고 세부 목적에 따라 제한을 둔다.

(1) 비상업적 이용

폰트 파일의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무료 폰트의 경우 많은 경우 비상업적 이용을 기본 허용 범위로 설정한다.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개인적인 문서 작성, 학교 과제 제출, 비영리 단체의 순수한 홍보물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해당 결과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매체에 활용할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다.

(2) 상업적 이용

상업적 이용은 폰트 파일의 사용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폰트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상업적 이용 가능'을 허가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 내에서도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더라도 기업의 상징인 CI·BI 제작이나 상표권 등록은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영상 매체는 단순 온라인 게시를 넘어 TV 광고나 영화 등 파급력이 큰 매체로 송출될 경우 추가 라이선스를 요구하기도 한다.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 서버 내에 폰트 파일을 직접 탑재하는 임베딩(Embedding)은 단순 사용이 아닌 재배포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된다. 단순 포장 디자인은 허용되나, 의류나 스티커처럼 폰트 디자인 자체가 상품 가치의 핵심이 되는 판매용 굿즈 제작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적 무료'라는 문구만 믿지 말고 로고, 방송, 탑재, 상품 제작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따른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2.3. 사용 매체

글꼴 파일 라이선스는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매체나 플랫폼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다. 사용 매체에 대한 제한은 폰트 제작사가 매체별 이용 대가를 구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다. 글꼴 파일 라이선스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는 사용 매체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인쇄물 매체

일반적인 문서, 책자, 신문, 잡지, 명함, 포스터 등의 종이 출력물 제작은 대부분의 라이선스에서 기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하는 폰트를 사용하여 판매 목적의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경우는 인쇄업체에서 외주 업체에 파일을 보낼 때, 글꼴 파일 자체를 함께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금지된다. 그에 따라 인쇄업체는 글꼴을 아웃라인(Outlines)[8] 처리 또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외주 업체가 해당 폰트의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 PDF 변환의 경우

문서를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글꼴 포함(Embedding)' 옵션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이는 문서의 레이아웃이 다른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도록 해당 폰트 파일의 데이터 일부 또는 전체를 PDF 파일 내부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때 이용자가 해당 폰트의 임베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 행위는 폰트 파일(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9] 이는 저작권 침해로 고발당하는 가장 빈번하고 위험한 사례 중 하나이다. 따라서 PDF 저장 시 '글꼴 포함 안 함' 옵션을 선택하거나(이 경우 다른 PC에서 글꼴이 깨져 보일 수 있음), 문서 전체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온라인 및 디지털 매체

온라인 매체 사용 시에는 우선 이미지의 사용과 폰트 파일의 사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폰트를 사용하여 작업한 결과물을 JPG, PNG 등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웹사이트 배너, 상세 페이지, SNS 콘텐츠 등에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폰트 파일 자체가 아닌 글자체의 형태(도안)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폰트 파일 자체를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자가 웹사이트에 폰트 파일을 업로드하여 방문자가 접속 시에 방문자 PC에 다운로드되게 하는 방식으로 웹폰트(Web Font)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폰트 파일의 복제 및 전송이 수반되므로, 일반적인 라이선스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웹폰트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웹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8) 아웃라인(Outlines) 처리란 디자인 소프트웨어(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에서 텍스트(Text) 속성을 제거하고, 글자의 모양을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Vector Image/Path)'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글자가 수정 불가능한 '그림(도형)' 데이터가 되고, 폰트 파일 없이도 어떤 컴퓨터에서든 똑같은 모양으로 보인다.
9) PDF 변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3.1.(2) PDF 임베딩 부분 참조.

웹폰트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6. 9. 2. 선고 2016고정1384 판결

피고인의 사용인인 OOO은 2015. 2. 1.경 부터 2015. 7. 1.경까지 OO병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OOOOO.co.kr)에 OO디자인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폰트 'hu놀이터 160'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이용하여 '영,화,감,상'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서울남부지법 2017. 5. 19. 선고 2016가소511595 판결

피고는 피고의 직원(또는 프리랜서)이 네이버에서 무료배포용 이 사건 서체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13. 8. 28. 및 2013. 9. 13. 피고가 관리 대행하는 한국OO재단의 블로그 중 '광주곤지암도자공원' 게시글과 '키즈비엔날레' 게시글에 서체 총 34자를 사용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3. 10. 17. 선고 2013가소44349 판결

피고가 "디자인풍선"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그 광고를 위해 홈페이지에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PNH FAST(페스티발) 서체 폰트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임베딩(Embedding) 매체

전자책, 특히 EPUB(이펍) 포맷은 기술적으로 웹페이지와 유사한 구조(HTML/CSS)를 가진다. 개발자가 의도한 서체를 독자의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리더기)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기 위해 전자책 파일(.epub) 내부에 폰트 파일을 직접 탑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폰트 파일을 전자책 내부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사용을 넘어선 배포 및 재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대부분의 폰트 회사는 이를 일반 상업 라이선스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인쇄/출판용 라이선스는 종이책 인쇄나 표지 이미지 제작까지만 허용하므로, 전자책 파일 내에 폰트를 탑재하여 판매하려면 'e-Book 임베딩 라이선스' 또는 '2차 저작물 제작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다수의 폰트 회사들이 ebook 라이선스에 PDF 변환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약관상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히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임베딩(Embedding)이란 글꼴파일을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나 하드웨어 기기의 메모리(펌웨어)에 물리적으로 내장(탑재)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임베딩은 단순한 사용이 아닌 '재배포(Redistribution)'의 성격을 강하게 띠므로 라이선스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일반적인 상업용 무료 폰트나 디자이너용 멤버십(구독)조차도

임베딩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반드시 임베딩 전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4) 영상/스트리밍 매체

유튜브, OTT 서비스 등 영상 콘텐츠의 자막이나 그래픽에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매체는 상업적 이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라이선스에서 영상 매체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특히 광고, 유료 채널 등 영리 목적이 강한 경우 더욱 엄격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나41666 판결

동영상 제작은 이 사건 사용권 계약서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도서판매 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동영상 내 이 사건 책 제목에 D 폰트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의 범위를 일탈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상표 관련 매체

CI/BI (Corporate Identity / Brand Identity) 제작은 기업이나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로고, 심볼, 마크 등을 만드는 작업으로, 폰트 라이선스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하게 다뤄지는 영역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상업적 라이선스(인쇄, 웹, 영상 등)를 구매했더라도, CI/BI 제작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유료 폰트 플랫폼에서는 기본 요금제(베이직)에서 CI/BI 제작을 제한하고 상위 요금제를 구독하거나, 별도의 'CI/BI 라이선스'를 구매해야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3
분쟁의 유형과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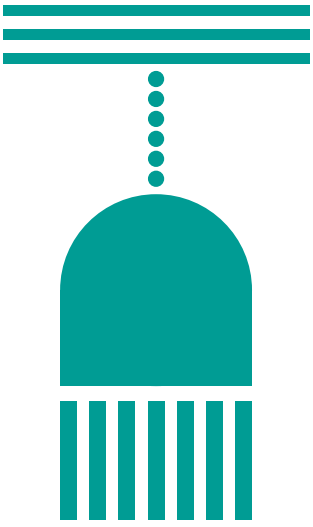

3. 분쟁의 유형과 주요 쟁점

3.1. 저작권 침해와 라이선스 위반

3.1.1.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이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적인 경로(예: P2P 사이트, 개인 블로그, 불법 소프트웨어 모음 USB 등)를 통해 다운로드, 설치, 복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이다. 이는 저작권자의 고유한 권리인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3.1.2. 라이선스(계약) 위반

라이선스 위반은 폰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자료실 등 '정당한 경로'를 통해 글꼴 파일을 획득(구매 또는 무료 다운로드)했지만, 저작권자가 설정한 '사용 허락 약관(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개인용/비상업용 무료' 라이선스를 가진 폰트를 기업의 홍보물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은 대체로 정당하게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10] 그 결과 라이선스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국한된다. 그리고 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예: 사용한 단일 폰트의 정식 라이선스 비용)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등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 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10)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2015다1024(병합), 2015다1031(병합), 2015다1048(반소) 판결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권 침해와 라이선스 위반을 구분하는 것은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매우 중요한 실익을 가진다. 권리자 측이 보내는 내용증명은 종종 이 둘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단순 계약 위반에 불과한 사안에도 저작권 침해나 형사 고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경우 자신의 파일 획득 경로를 확인하여, 만약 정당한 경로였다면 이는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 '계약 분쟁'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2. 글꼴 파일의 배포 경로

글꼴은 그 배포 방식과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번들 글꼴',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 그리고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글꼴은 각각 다른 법적 분석과 대응을 요구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실제 상담 사례는 이 세 가지 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유형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저작권 침해' vs '라이선스 위반'

파일을 획득한 경로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집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범위 초과 사용'은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경로: ✕불법 경로 (P2P, 블로그 공유)
행위: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설치, 복사, 배포.
법적 성격: 형사 처벌 대상
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

'라이선스 위반' (계약 위반)

경로: ✅정당한 경로 (공식 사이트, 번들)
행위: '개인용'을 '상업용'으로 사용, '번들 폰트'를 외부 프로그램에서 사용
법적 성격: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아님, 민사상 손해 배상 (라이선스 비용 등)

3.2.1. 번들 글꼴

번들 글꼴(Bundle Font)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예: 운영체제, 워드프로세서,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되는 글꼴 파일을 의미한다. 번들 글꼴의 통상적인 라이선스 내용은 번들된 해당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등) 내에서의 사용을 주된 허락 범위로 하고, 폰트 파일 자체의 독립적인 복제 및 상업적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했기 때문에 번들로 제공된 폰트 역시 모든 용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타사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로고, 포스터, 이미지 등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권리자 측은 해당 폰트가 번들로 제공된 특정 프로그램(예: 한글, 파워포인트) 내에서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므로 그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라이선스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한글 프로그램의 번들 폰트를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여 유튜브 자막 등을 제작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나아가 한글이나 PPT로 작성한 문서를 PDF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도 약관 위반으로 문제 삼기도 한다.

(1) 번들 글꼴의 주요 허용 범위

번들 글꼴은 원칙적으로 함께 제공된 특정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용가능하다. 글꼴이 번들된 소프트웨어(예: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Windows 등)를 정당하게 구매 및 설치한 사용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내에서 글꼴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디자인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목적이나 일반적인 업무를 위한 문서 작성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나 결과물을 종이나 기타 인쇄물로 출력하는 행위는 대부분 허용된다. 나아가 번들 폰트를 사용하여 만든 문서를 이미지 파일(JPG, PNG 등)로 변환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웹페이지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폰트 파일 자체가 아닌, 폰트가 표현된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번들 글꼴의 라이선스는 다음 행위들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폰트 파일의 독립적 추출 및 복제 (저작권 침해)

번들된 소프트웨어와 분리하여 폰트 파일 자체를 별도로 복사하여 타인에게 전송/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한다.

폰트 파일의 수정 및 변경 (저작권 침해)

폰트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코드 자체를 수정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상업적 이용 위반의 경우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된 번들 폰트를 사용하여 영리 목적의 결과물(예: 회사 로고, 상품 패키지, 유료 광고 디자인, CI/BI 제작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 번들 폰트는 상업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므로, 개별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소프트웨어 내에서의 사용이 허용된 폰트를 해당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디자인 프로그램(예: Adobe, AutoCAD 등)에서 주된 작업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3) 쟁점 사례

번들 폰트의 설치 과정에서 윈도우의 시스템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되고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 묵시적 허락에 해당하여

라이선스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과거 한컴오피스 2014 이전 버전 등 일부 소프트웨어는 번들 폰트를 윈도우 시스템 공용 폴더(C:\Windows\Fonts)에 설치했고, 이로 인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가 자동으로 목록에 나타나 사용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원은, 폰트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를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11] 즉, 사용자가 폰트 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해킹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한글과컴퓨터 등은 2014 버전 이후부터는 번들 폰트가 다른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변경했으므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12.자 2014나2017648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이는 '아래한글' 또는 'MS워드' 프로그램에 번들(bundle)로 포함되어 제공되는 서체파일들로서 위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운영체제인 Windows 폴더의 하위폴더인 Fonts 폴더에 저장되고, 위 저장된 서체파일들은 위 프로그램들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사용은 저작권 침해행위의 유형인 복제, 전송, 배포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3.2.2. '무료' 글꼴

'무료 폰트'라는 이름으로 배포되는 수많은 글꼴 역시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무료'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모든 목적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대부분의 무료 글꼴 라이선스에는 '개인적, 비영리적 목적에 한함'이라는 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업, 공공기관, 교회, 학교 등 단체에서 홍보물, 유튜브 영상, 홈페이지 등에 해당 글꼴을 사용했다가 라이선스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1) 무료 글꼴의 주요 허용 범위

무료 글꼴(Free Font)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용조건(라이선스)은 글꼴 제작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무료'가 상업적 이용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통상적인 무료 글꼴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나뉜다.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구분	통상적인 내용
개인/비상업적 이용	개인적인 용도의 문서 작성, 비영리 목적의 과제, 포트폴리오 등에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한다.
상업적 이용	영리 목적의 활동(광고, 로고, 제품 디자인, 웹사이트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된다.
CI/BI 제작 이용	회사의 로고(CI/BI) 제작에 해당 글꼴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허용 여부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무료 폰트는 개인의 취미 활동, 학교 과제, 비영리 단체의 홍보물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목적의 이용을 허용한다. 그리고 폰트를 사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2)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

무료 글꼴 라이선스가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폰트 파일 자체의 배포 또는 공중송신

글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수정 없이 재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 금지된다. 이는 글꼴 파일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폰트 파일의 수정/개작

폰트 파일의 코드를 수정하거나 글자 모양을 변경하여 새로운 폰트로 제작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상업적 이용 제한

가장 흔한 제한 사항으로, 무료 폰트가 비상업적 용도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할 수 있다.

(3) 쟁점 사례

무료 글꼴과 관련하여 법원은 '네이버 자료실' 사례에서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법원은 이용자가 네이버 자료실에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글꼴을 내려받는 과정에 주목했다. 당시 네이버 자료실의 인터페이스는 '무료 다운로드'라는 문구가 눈에 잘 띄게 배치된 반면, '개인, 국내 사용에 한함'과 같은 이용 범위 제한 문구는 화면 하단에 작게 표시되어 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이용 범

위 제한 조건이 이용자의 의사에 명확하게 편입되어 유효한 계약(사용허락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고지가 불분명했으므로, 애초에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해당 글꼴을 상업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210 판결

D 자료실에서 이 사건 서체를 다운받는 화면 하단에는 "무료사용 범위는 개인이면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안내문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무료다운로드" 사각형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이 사건 서체에 관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무료다운로드" 부분 바로 아래에는 "사용범위 프리 – 개인, 국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개인이',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점, 무료사용범위를 제한하는 위 안내문구는 "무료다운로드" 사각형 부분과 상당히 떨어진 화면 하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서체에 관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안내문구가 사용허락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포섭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서체에 관하여 사용범위를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최근에는 비영리법인 복지원의 홍보지 제작 과정에서 폰트 파일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제35조의5[12] 에 규정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므로, 피고 복지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은 특정한 도안의 서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문서작성 등에 해당 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비상업적·개인용으로 비업무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상업적 용도의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한 사용 시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피고 복지원의 이 사건 홍보지 제작은, 아동들의 건강하고

12)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식습관 향상 및 영양 증진과 가정의 건강한 식문화 형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F 프로그램'라는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교육프로그램 활동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홍보지는 피고 복지관이 주최하는 'G' 행사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이 사건 서체는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 위 행사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부분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홍보지는 1쪽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홍보지의 홍보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위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초등학교 고학년 한부모가정 아동 및 양육자'로 한정된다고 보이고,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홍보지를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지의 내용상 게시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권리·사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프로그램 입수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 외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2.3. 불법 취득 글꼴

번들 글꼴이나 무료 글꼴과 관련된 분쟁이 주로 민사상 계약 위반의 성격을 띠는 반면, 명백한 불법 경로를 통해 글꼴 파일을 취득한 경우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법적 위험을 수반한다. 대표적인 불법 취득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개인 블로그 및 불법 공유 사이트

'무료 폰트 모음' 등의 이름으로 개인 블로그나 웹하드에 올라온 글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지인으로부터의 파일 복사

타인이 소유한 글꼴 파일을 USB 메모리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복사하여 전달받는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글꼴

불법 복제된 운영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에 함께 포함된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

자막 파일 등과 함께 배포된 글꼴

영상 자막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배포된 글꼴 파일을 무심코 설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글꼴 파일을 취득하여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후 해당 글꼴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상업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침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3. 글꼴 파일의 사용 매체

글꼴 파일의 법적 책임은 그 파일이 어떤 매체와 형태로 최종 결과물에 구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미지, 영상, PDF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이 사용되므로, 각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3.1. 온라인 매체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의 폰트 파일의 사용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며, 특히 유튜브와 웹사이트 게시물이 두드러진다.

(1) 이미지 및 영상 파일 (유튜브 썸네일, 웹사이트 배너 등)

가장 명확한 원칙 중 하나는 글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이 일단 정적인 이미지 파일(예: JPG, PNG, GIF)로 변환되면, 그 이미지 자체는 더 이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과 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법적 보호의 대상인 '프로그램'과 그 결과물인 '이미지'는 별개의 실체로 취급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된 글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나 디자인을 만든 후, 이를 화면 캡처하거나 '이미지로 저장하기' 기능을 통해 JPG 파일로 만들고, 이 이미지 파일을 유튜브 썸네일, 웹사이트 배너, SNS 게시물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글꼴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글 프로그램에서 글자를 입력한 후 그 부분만 이미지로 따서 유튜브에 올린 경우, MS오피스 정품의 번들 폰트를 이용해 작성한 문구를

캡처 화면으로 홈페이지에 사용한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 원칙은 법적 책임의 경계를 비교적 명확히 보여준다. 글꼴 프로그램이 활성 상태에서 결과물을 생성하는 '창작 단계'에서는 라이선스 준수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결과물이 일단 정적인 이미지로 고정되어 배포되는 '이용 단계'에서는 최종 이용자에게 글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이는 글꼴의 시각적 디자인(글자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대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327452 판결

원고는, 피고가 2018. 3. 26.경 불상의 경로로 원고의 C 서체프로그램(D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추절임" 문구를 생성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C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체테스트창에 고추절임 등의 글씨를 입력하여 이를 캡쳐한 후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수정 후 도안을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PDF 임베딩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일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포맷인 PDF(Portable Document Format)는 플랫폼 독립적이며 원본 문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장점 덕분에 정보 공유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PDF의 기술적 특성, 특히 글꼴(Font)을 문서 내부에 포함하는 '임베딩(Embedding)' 기능[13] 은 예상치 못한 저작권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단순한 이미지 제작이나 인쇄물 배포 단계를 넘어, 웹사이트에 게시된 PDF 문서를 대상으로 한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금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폰트 저작권자들은 PDF 파일 내부에 글꼴 파일이 포함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 PDF를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PDF 내 임베딩이 폰트 프로그램 전체가 아닌 문서에 사용된 글자 정보만 부분적으로 포함(Subsetting)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적으로 PDF에서 폰트 파일을 온전한 형태로 추출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폰트 프로그램의 시장 가치를 대체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며, 문서의 가독성을 위한 부수적 이용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

13) PDF는 문서를 열람하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해당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레이아웃과 서체가 원본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글꼴 파일의 정보(Outline data 등)를 PDF 파일 내부에 저장한다. 이를 임베딩이라 한다.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PDF 임베딩 쟁점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① 이용자의 직접적인 라이선스 위반 및 PDF 변환

이용자가 처음부터 라이선스 범위를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PDF로 변환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높은 위험군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많은 무료 폰트가 '개인'에게만 무료이고 '기업·기관·단체'에는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사용하여 PDF를 제작·게시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인쇄용 라이선스만 보유한 사용자가 별도의 임베딩 또는 디지털 배포 라이선스 없이 PDF를 웹에 게시하는 행위는 약관상 명시된 제한 사항을 어기는 라이선스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외주 제작업체의 위반 결과물(PDF)을 발주처가 게시한 사례

디자인 업체(수급인)가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제작한 PDF를 납품받은 발주처(도급인)가 이를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 발주처의 법적 리스크 수준은 '낮음'으로 분류된다. 글꼴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폰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고 실행하여 결과물을 생성한 디자인 업체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PDF 내 임베딩은 문서의 가독성을 위한 부수적 이용에 불과하며 폰트 프로그램의 시장 가치를 대체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③ 번들 글꼴을 PDF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예컨대 한컴오피스 내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PDF로 저장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라이선스 범위 내의 이용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한글에 포함된 번들 폰트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여 PDF를 만든 경우는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3.2.1.(3)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번들 글꼴을 인식하여 PDF로 제작한 경우에는 묵시적 허락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3.3.2. 오프라인 인쇄물 및 광고 (간판, 상품, 포장재)

전통적인 매체인 간판과 각종 인쇄 홍보물에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한다. 간판, 의류, 포장지, 각종 상품 등 물리적 제품에 글꼴이 사용된 경우의 책임 소재는 최종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위해 글꼴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실행한 물품 제작 업체에 있다. 실제 상담 사례에는 간판에 사용된 글씨체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식당 주인,

포장지에 인쇄된 글꼴 때문에 연락을 받은 식품 회사, 고객이 제공한 이미지로 레터링 풍선을 제작한 판매자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대한 답변은 동일하다. 사업주가 직접 글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디자인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간판 업체나 디자인 업체로부터 완성된 결과물(디자인 시안, 인쇄된 간판 등)만을 받아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글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3.3. CI/BI 및 로고 (Corporate/Brand Identity & Logo)

기업이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CI/BI 및 로고의 경우 인쇄 용도 외에 CI/BI 및 로고 용으로 별도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의 로고나 브랜드 로고는 기업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상업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로고 제작에 사용되는 글꼴은 'CI/BI' 또는 '로고' 제작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많은 글꼴 라이선스가 일반적인 상업적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로고 제작과 같은 영구적이고 상징적인 사용은 별도의 고가 라이선스를 요구하거나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 라이선스 확인 없이 제작된 로고는 향후 막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3.4. 계약 및 고용 관계에서의 책임 소재

글꼴 저작권 분쟁은 종종 외부 디자이너와 고객, 직원과 회사 등 여러 주체가 얽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이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핵심이다.

3.4.1. 행위자 책임 원칙과 고객의 책임 여부

글꼴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생성한 '행위자'에게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도급인 고객(기업, 공공기관, 개인 사업자 등)이 외부의 디자인 전문 업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로고, 간판, 인쇄물, 웹사이트 등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무단으로 글꼴 파일을 사용했다면,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글꼴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사용한 디자이너에게 귀속된다. 도급인 고객은 글꼴 파일 자체가 아닌, 디자인 작업의 최종 결과물(예: JPG 이미지 파일, 인쇄된 간판, PDF 문서)만을 납품받아 사용했을 뿐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없다. 따라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등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민법 제757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클라이언트에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나 라이선스 위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32013 판결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인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중략)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인쇄업체에 문서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급인인 인쇄업자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인쇄업자가 편집한 문서에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4.2. 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개인이 아닌 조직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히 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64345 판결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이 원고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사업활동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이 사건 서체가 이용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14] 따라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가합565248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E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에는 'E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디자이너로서 이 사건 홍보물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 E과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는 E이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피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민법 제757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즉, 회사가 평소 저작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감독하며, 저작권 준수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4)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4
대응 전략 및 예방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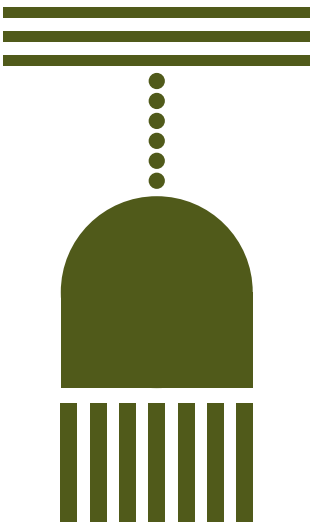

4. 대응 전략 및 예방 가이드

4.1.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매뉴얼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 명의의 글꼴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섣불리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침착하게 밟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사실관계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에 적시된 게시물이나 제작물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 누가: 해당 디자인 작업을 누가 수행했는가? (내부 직원인가, 외부 업체인가?)
- 언제: 언제 그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 어떤 경로로: 사용된 글꼴 파일을 어떤 경로로 획득했는가?
  (공식 사이트, 네이버 자료실, 개인 블로그, 불법 복제 파일 등)
- 어떻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업했는가?
  (한컴오피스, 포토샵,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

2단계: 법적 타당성 검토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 가이드에서 설명한 법적 원칙 및 사례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에 해당하는지(또는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 / 라이선스 위반 자가 진단

화살표를 따라가며 내 상황의 법적리스크를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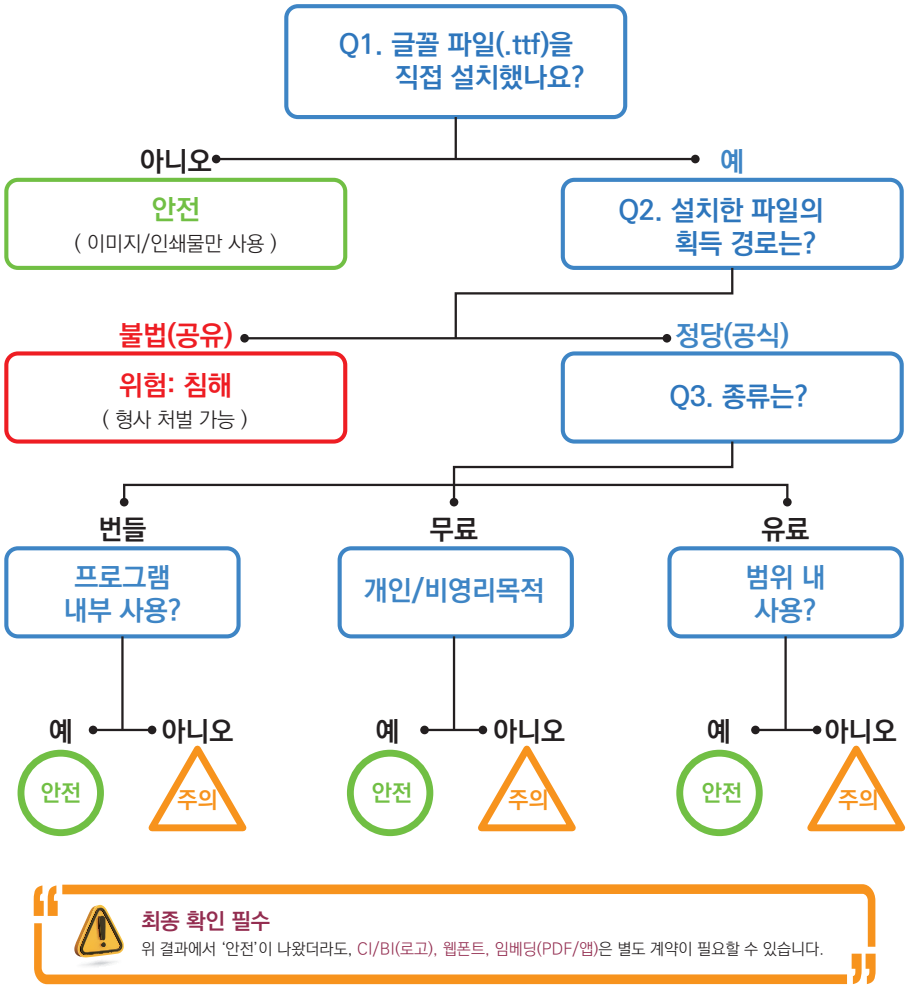

최종 확인 필수

위 결과에서 '안전'이 나왔더라도, CI/BI(로고), 웹폰트, 임베딩(PDF/앱)은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대응 전략 수립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결정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 결과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대응'일 수 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대

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답변할 의무도 없다. 섣불리 연락했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거나,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귀하가 주장하는 폰트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며, 향후 불필요한 연락을 삼가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회신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나 라이선스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

4.2. 합의와 조정

4.2.1 합의금의 수준

저작권 침해나 라이선스 위반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 책임의 유무,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고가 서체 파일을 취득한 경위, 원고가 제출한 판매 가격표의 기재 내용과 양 당사자가 제시한 거래 사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내용과 침해기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15)]

특히 폰트 분쟁에서는 권리자 측이 고가의 폰트 패키지 전체 구매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폰트 한두 개를 사용했을 뿐인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체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소송에서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패키지 전체 가격이 아닌 실제로 침해 행위에 사용된 폰트 1~2종의 정상적인 사용료(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64345 판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는데, 피고의 직원은 2015. 8.경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이벤트 페이지를 업로드하였다.

원고의 'G 폰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H' 폰트 소프트웨어(253타입 605종) 또는 'I' 폰트 소프트웨어(271타입 645종) 등 서체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료가 242만 원, 홍보용 이미지 제작 등을 위한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비용이 1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도 위 수백 종의 서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백 종에 이르는 서체 프로그램의 개별이용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침해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나21142 판결 등

①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2015. 8.경 최초 게시된 후 2015. 9. 17.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만 유의미하게 이용되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가 2019. 초경까지 피고의 유튜브 계정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위 및 태양, 이후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2.2.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 활용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가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울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의 중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이 논의되므로, 과도한 요구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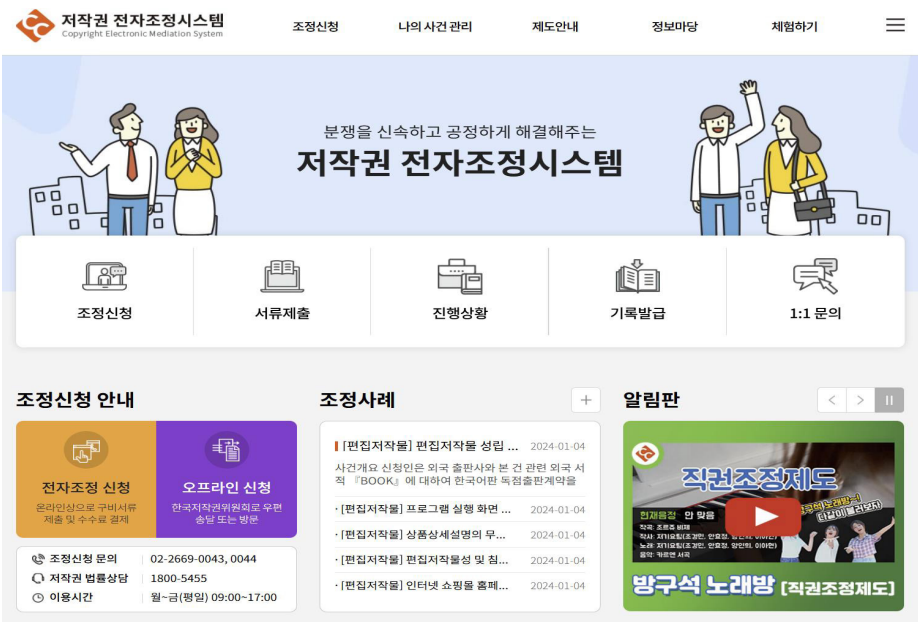

4.3.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

4.3.1. 기업 및 공공기관

가장 좋은 전략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의 실무 가이드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글꼴 저작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1) 폰트 관리 정책 수립 및 정기 점검

사용 가능 폰트 목록 지정

기업이나 팀 내에서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폰트 목록(예: 나눔글꼴, 본고딕, 공공누리 제1유형 폰트 등)을 지정하고, 그 외 폰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부 정책을 수립한다.

설치 승인 절차 마련

업무용 PC에 새로운 폰트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제도화한다.

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폰트의 경우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사용목적, 범위 등)을 폰트 사용 대장의 형태로 문서화해 관리하거나, 적어도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캡처해서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사용할 증거로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기적인 PC 점검

'내 PC 폰트 점검기*'와 같은 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업무용 PC에 라이선스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폰트 파일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삭제한다.

*** 내 PC 폰트 점검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기관 폰트 파일 사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제작, 사용자 스스로가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직접 점검하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KERIS 홈페이지 참조. https://copyright.keris.or.kr/wft/pgrmDwn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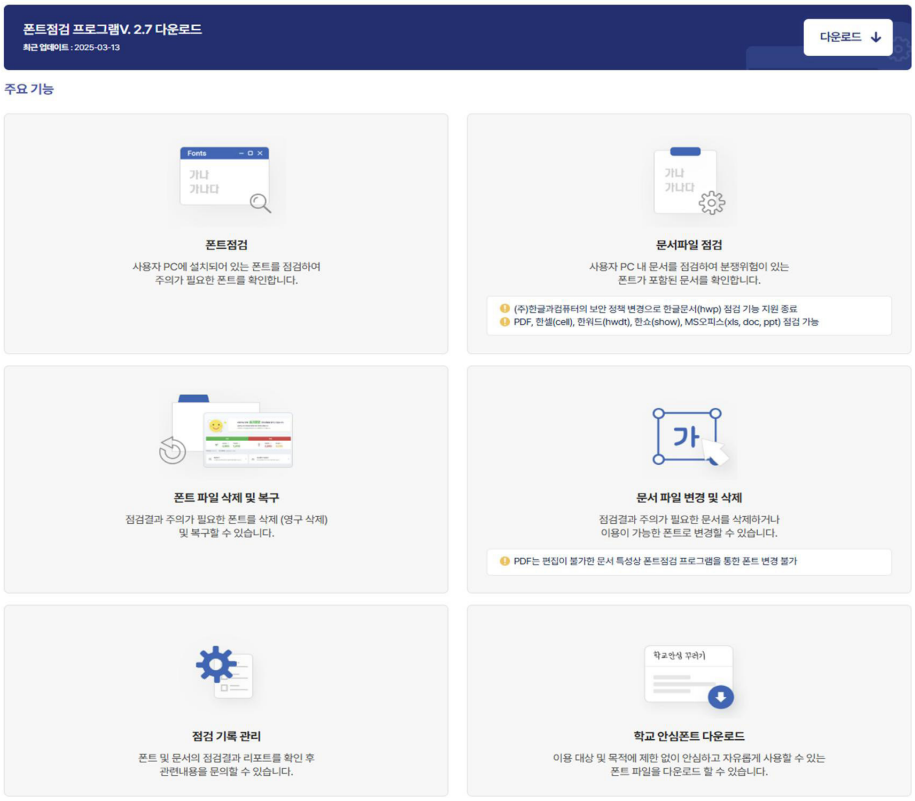

(2) 외주 계약서 관리

외주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결과물에 사용된 모든 소스(글꼴, 이미지 등)의 저작권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역시 수급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지식재산권 보증 및 면책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발주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보증 및 면책 조항 예시

제O조 (지식재산권 보증)

"수급인"(디자이너/업체)은 본 계약에 따라 "발주처"(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최종 결과물(이하 "산출물")에 사용된 모든 구성 요소(글꼴 파일, 이미지, 소스코드, 기타 저작물 일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수급인"은 "산출물" 제작에 필요한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였으며, "발주처"가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예: 상업적 홍보, 웹 게시, CI/BI 활용, 2차 가공)으로 "산출물"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O조 (면책 및 손해배상)

"산출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일체의 클레임, 소송, 분쟁(내용증명 발송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처"를 방어하고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상기 분쟁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 손실, 법률 비용(변호사 비용, 자문 비용 포함) 및 제3자에 대한 합의금, 배상금에 대하여 "수급인"이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발주처"는 제3자로부터 클레임 등을 통지받은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청 시 라이선스 증빙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1. 현황 파악]

- [ ] 모든 업무용 PC에 '내 PC 폰트 점검기' 또는 이에 준하는 점검 툴을 설치하여 정기적(예: 분기 1회)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 ] 점검 결과, 라이선스가 불명확하거나 불법 취득된 폰트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관련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2. 정책 및 도입]

- [ ] 전 직원이 사용 가능한 '공식 사용 승인 폰트 목록'(예: 공공누리 제1유형, OFL 폰트, 전사 구매 라이선스 폰트)을 작성하여 사내망 등에 명확히 공지하고 있는가?
- [ ] 해당 목록 외의 신규 폰트(유/무료 포함)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관리 부서(IT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라이선스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가?

[3. 계약 및 외주 관리]

- [ ] 디자이너, 인쇄소, 광고 대행사 등 모든 외부 업체와의 용역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보증 및 면책 조항'이 표준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 [ ] 외주 업체로부터 결과물 납품 시, 사용된 폰트 목록 및 라이선스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가?

[4. 교육 등]

- [ ] 신규 입사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글꼴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이는 '양벌규정'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 ]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행위자(직원)뿐만 아니라 법인(회사/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음(양벌규정)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고 있는가?

4.3.2. 개인 이용자

(1) 안전한 다운로드 경로 이용 (공유마당, 공공누리 활용)

인터넷 검색창에 '무료 폰트'를 검색하여 블로그나 비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해당 파일이 불법 복제물이거나, 구버전 라이선스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곳의 'KOGL(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혹은 'OF(오픈 폰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폰트는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안전하다.

(2) OS 기본 서체 및 번들 서체의 사용

폰트 파일은 설치하는 순간 약관(EULA)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나, 일반 사용자가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폰트보다는 운영체제(Windows, Mac)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서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특정 소프트웨어(한글, 포토샵 등) 설치 시 함께 깔리는 '번들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특히 한글(HWP) 프로그램 사용 시, 문서 정보 내에 시스템에 없는 폰트나 유료 폰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서를 PDF로 변환하여 외부에 공유할 때 폰트 파일이 함께 저장(임베딩)되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된 글꼴 목록 중 기본 글꼴이 아닌 것이 있다면, 이를 기본 글꼴로 변경하거나 PDF 저장 시 '글꼴 포함' 옵션을 해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특별한 폰트 파일의 사용 시 라이선스 확인 습관

디자인적 필요에 의해 별도의 폰트를 설치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폰트 제작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이선스 범위(Scope of Use)'를 확인한다.

체크리스트

- 개인 비영리 목적만 허용하는지, 상업적 이용도 가능한지 확인한다.
- CI/BI(로고), 영상 자막, 임베딩(서버 탑재) 등의 사용 매체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별도로 체크한다.
- 무료 배포'라고 써있더라도, 사용 범위가 '인쇄물'로 한정되고 '웹 게시'는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용도 제한 유무를 필히 살핀다.

4.3.3. 안전한 글꼴 소스 활용

(1)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안심글꼴파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 이용조건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폰트들을 모아 '안심글꼴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2) 공공누리 안심글꼴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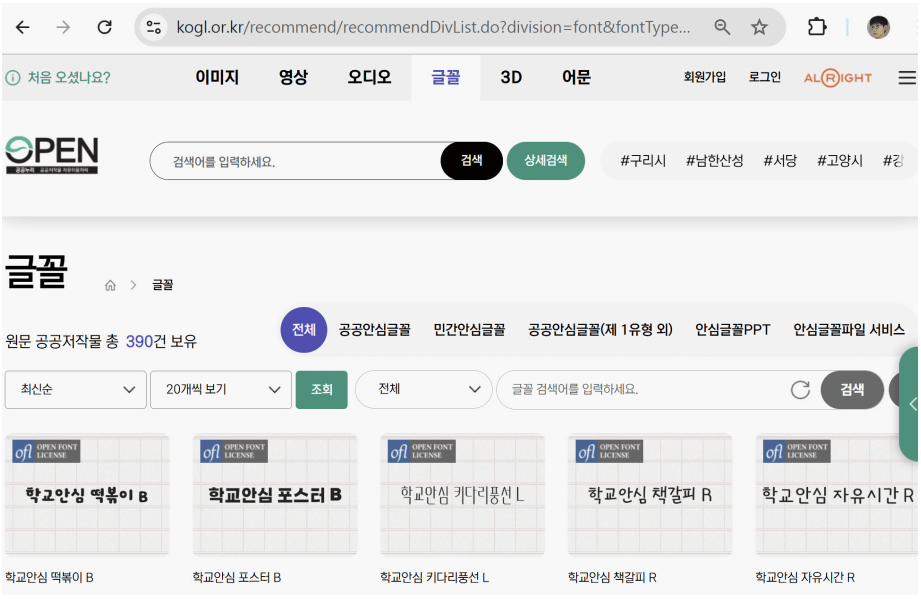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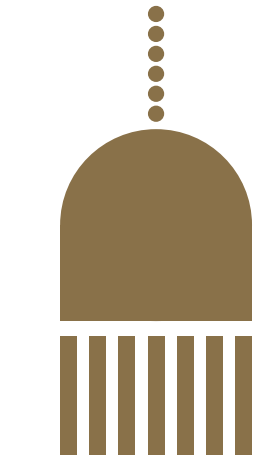

[부록] 글꼴 저작권 실무 Q&A

본 Q&A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례 및 최신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폰트 파일의 설치와 저작권의 보호대상]

Q1. 글꼴(폰트)의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글자 모양인가요?

A.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글자 모양(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제작된 '폰트 파일(.ttf,.otf 등)'이라는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글자 모양을 모방하거나 손으로 그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1.1.2. 참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Q2.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무료 폰트 모음'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써도 되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저작권자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경로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자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유마당' 등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3.2.3. 참조)

Q3. 중고 컴퓨터를 샀는데 이미 유료 폰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전 사용자가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폰트 라이선스는 양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불법 복제된 파일이라면 현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포맷하거나 불필요한 폰트는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폰트 파일명을 바꾸거나 확장자를 변경해서 쓰면 안 걸리나요?

A. 걸립니다. 단속 프로그램은 파일명이 아닌 파일 내부의 고유 식별 코드(Hash값)나 저작권 정보를 인식합니다. 오히려 파일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되거나 고의성을 인정받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5. 윈도우 살 때 기본으로 있는 폰트(맑은고딕, 바탕체 등)를 회사 업무에 써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윈도우(OS)에 기본 탑재된 폰트는 운영체제 이용자에게 사용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미지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Q6. '가정 및 학생용(Home & Student)' 한컴오피스를 회사에서 썼는데, 그 안의 폰트도 문제 되나요?

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과 폰트 라이선스 위반이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오피스를 회사에서 쓴 것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다만, 그 안에 포함된 번들 폰트 파일의 사용 자체를 별도의 폰트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험합니다.

[번들 폰트]

Q7. 한컴오피스를 깔 때 설치된 폰트를 포토샵에서 써도 되나요?

A. 특정 소프트웨어 내에서의 사용만 허용된 번들 폰트를 해당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디자인 프로그램(예: Adobe, AutoCAD 등)에서 작업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컴오피스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에 자동 설치된 폰트가 포토샵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식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가 기술적 제한을 걸지 않았다면 '묵시적 이용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16]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한컴 등은 2014 버전 이후부터는 번들 폰트가 다른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변경했으므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2.1.2.(2)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위 프로그램을 문자발생기에 설치하면 번들로 제공된 서체들이 자동으로 문자발생기의 운영체제인 Windows 폴더의 하위폴더인 Fonts 폴더에 저장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문자발생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의 '동녘', '울릉도', '수평선', '엽서', '목판'체가 자동으로 문자발생기의 운영체제에 저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위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서체파일에 관한 라이센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이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문자발생기에 저장된 서체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서체들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여 위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Q8. 한글과컴퓨터 패키지를 지웠는데 폰트 파일만 남아서 계속 썼습니다. 괜찮나요?

A. 위험합니다. 번들 폰트의 이용 권한은 모체 프로그램(한컴오피스)의 정당한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사용권이 소멸했다면, 잔존한 폰트 파일도 삭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3.2.1. 참조)

Q9. 번들 폰트 파일을 USB에 담아 다른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저작권 침해(복제권 위반)입니다. 번들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 설치 과정을 통해서만 설치되어야 하며, 파일만 따로 추출하여 이동·설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10. MS 워드에서 쓴 글씨를 캡처해서 홈페이지 배너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되나요?

A.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면에 출력된 글자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폰트 파일(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체 도안만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1.1.2. 참조)

[외주 용역 및 디자인 결과물 사용]

Q11. 디자인 업체에 로고 제작을 맡겼는데, 폰트 저작권자가 저에게(발주처)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A. 발주처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17] 폰트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하고 이용한 자(디자인 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발주처는 결과물(이미지)만 넘겨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복제 책임이 없습니다. 폰트 저작권자에 외주 제작된 것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3.4.1. 참조)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32013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인쇄업체에 문서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급인인 인쇄업자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인쇄업자가 편집한 문서에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Q12. 외주 업체가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외주 업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발주처에게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기록 등을 통해 외주 사실만 입증하면 폰트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3.4.1. 참조)

Q13.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계약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수급인(제작자)은 폰트 등 제3자의 저작권을 적법하게 해결하여 납품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4.3.1.(2) 참조)

Q14. 간판을 만들었는데 글씨체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 통상적으로 간판 제작 시 폰트 파일을 사용한 것은 간판업자이지 가게 주인이 아닙니다. 간판에 쓰인 글자 모양(도안)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가게 주인이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3.4.1. 참조)

Q15. 디자이너가 폰트 파일을 같이 보내줬습니다. 받아서 설치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디자이너가 정품을 샀더라도, 그 파일을 고객에게 전송(배포)할 권리는 없습니다. 고객이 그 폰트를 수정·편집하려면 고객도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Q16. 제가 만든 디자인 결과물을 납품할 때, 폰트 파일도 같이 줘야 하나요?

A. 안 됩니다. 폰트 파일 양도는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텍스트 수정을 원한다면 클라이언트가 직접 해당 폰트를 구매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PDF, 임베딩]

Q17. 외주 제작된 회사 소개서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폰트 업체가 번들 폰트의 '무단 재배포'라는데요?

A.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주 제작된 경우 발주처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며,[18] PDF에 폰트가 포함(Embedding)되지만, 이는 문서 가독성을 위한 기술적 과정이며, 이용자가 PDF에서 폰트 파일만 추출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3.3.1.(2) 참조)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32013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인쇄업체에 문서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급인인 인쇄업자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인쇄업자가 편집한 문서에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주의사항

위 사례는 아직 법원에서 판단된 바 없는 내용으로, 결론이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8.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웹폰트(Webfont)를 썼습니다. TTF를 변환해서 서버에 올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보유한 TTF 파일을 woff, eot 등으로 변환하여 웹서버에 올리는 것은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그리고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웹폰트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구글 폰트 같은 오픈 라이선스 웹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2.2.3.(2) 참조)

Q19. 웹에이전시가 제작해준 홈페이지 폰트가 문제 되었습니다.

A. 원칙적으로 책임은 웹에이전시에 있습니다. 다만, 웹폰트 방식(서버에 폰트 파일 업로드)이라면 서버 관리 주체인 발주처에게도 관리 책임이 물어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라이선스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0. 앱(App)을 개발 중인데 폰트 파일을 앱 안에 넣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이를 '임베딩(Embedding)'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PC 설치용 라이선스와는 전혀 다른 고가의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앱 설치 시 폰트 파일도 같이 사용자 폰에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2.2.3.(3) 참조)

Q21. 전자책(e-Book/EPUB) 제작 시 폰트는 어떻게 하나요?

A. EPUB 파일 내부에 폰트 파일을 탑재해야 한다면 '전자책 임베딩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이미지로 통째로 변환해서 넣는 방식(JPG 통이미지)이라면 일반 제작용 라이선스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 유튜브, OO캔버스 등]

Q22. OO캔버스에서 만든 썸네일을 유튜브에 썼는데 폰트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A. OO캔버스 등 디자인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하여 플랫폼 상에서 제작하고 다운로드한 결과물(JPG 등)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무료 회원이 프리미엄 글꼴을 사용한 경우에는 약관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플랫폼의 저작권 이용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3. OO캔버스에 있는 예쁜 폰트가 제 컴퓨터에는 없어서 캡처해서 썼습니다.

A. 플랫폼 사용자라면 약관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랫폼 라이선스는 '플랫폼의 편집 도구'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제작·다운로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소를 캡처하여 2차 가공하는 것은 라이선스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플랫폼의 저작권 이용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4. 유튜브 자막에 무료 폰트를 썼는데 '방송 송출'은 별도 계약이 필요하대요.

A. 폰트 라이선스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일부 업체가 유튜브를 '방송'으로 해석해 과도한 요금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동영상/웹 게시' 등으로 분류하여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플랫폼의 저작권 이용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5. OO 플랫폼 무료 사용자인데 상업용 디자인을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A. OO의 무료 콘텐츠(폰트 포함)로 만든 독창적인 디자인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사용자가 OO 콘텐츠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OO 약관에서는 독창적인 디자인인 경우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플랫폼의 저작권 이용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6. 유튜브 영상 편집자가 불법 폰트를 썼습니다. 채널 주인도 처벌받나요?

A. 원칙적으로 행위자(편집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채널 주인이 편집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감독하는 관계라면 민사상 및/또는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주 프리랜서라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채널 주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등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채널 주인 책임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3.4. 참조)

Q27. 영상 자막이 아니라 영상 속 배경에 찍힌 간판 글씨도 문제 되나요?

A. 아닙니다. 서체 이미지만 사용한 것이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1.1.2. 참조)

[특수 기술 (3D 프린팅, 자수, AI)]

Q28. 3D 프린터로 글자를 출력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인가요?

A. 폰트 파일을 3D 모델링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입체화한 후 STL 파일로 변환·출력하는 경우, 폰트 파일을 '복제·가공'하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상업용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 모양을 보고 모델링(트레이싱)했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Q29. 컴퓨터 자수기계에 폰트 파일을 넣어서 이름을 새겨주고 돈을 받습니다.

A. 자수기계 내에 기본 내장된 폰트를 쓰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유료 폰트 파일을 구해 자수기계에 무단으로 복사해 넣고 사용하는 것은 폰트 파일 복제권 침해입니다.

Q30. 미드저니(AI)가 생성한 이미지 속에 있는 글자(텍스트)는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A. 없습니다.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는 폰트 파일(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한 것이 아니라, 픽셀 단위로 그려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폰트 저작권 침해 이슈는 없습니다.

Q31. AI 학습용 데이터로 폰트 파일을 사용해도 되나요?

A. 폰트파일 자체를 AI에게 학습시키기 위해 서버에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폰트로 구현된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것은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과는 무관합니다.

Q32. 폰트 파일을 수정해서 새로운 폰트를 만들면 제 저작권이 되나요?

A.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수정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이자 '동일성유지권' 침해입니다. 수정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새로 만든 폰트에 대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는 있겠지만,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료 폰트 및 라이선스 해석]

Q33. '개인/기업 무료'라고 해서 썼는데, CI(로고) 제작은 유료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A.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많은 폰트 회사가 CI/BI, 임베딩, 2차 변형 판매 등은 별도 라이선스로 규정하여 제한합니다. 사용 전 라이선스 범위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2.2.3.(5) 참조)

Q34.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무료로 받은 폰트인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A. 네이버 자료실에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만 있고 사용 범위 제한(비영리 개인 한정 등)이 명확히 눈에 띄지 않았던 경우, 사용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이 무료폰트의 사용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가 있습니다.[19]

(상세한 내용은 본문 3.2.2.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210 판결

"무료다운로드" 부분 바로 아래에는 "사용범위 프리 – 개인, 국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개인이',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점, 무료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위 안내문구는 "무료다운로드" 사각형 부분과 상당히 떨어진 화면 하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서체에 관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안내문구가 사용허락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포섭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Q35. OO구름 같은 구독형 폰트 서비스를 쓰다가 해지했습니다. 예전에 만든 이미지는 지워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구독 기간 중에 적법하게 제작된 결과물(이미지, 인쇄물)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해지 후에 해당 폰트로 '새로운' 작업을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Q36. 폰트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써도 되나요?

A.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저작재산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채권단에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분쟁 대응 및 합의]

Q37.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사과하고 합의해야 할까요?

A. 섣부른 대응은 금물입니다. 우선, ①어떤 폰트인지 ②어디서 났는지(정품/무료/외주) ③실제 사용했는지 등을 자체 조사하세요. 무작정 "죄송하다"고 하면 침해를 자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4.1. 참조)

19)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210 판결

Q38. 고소당하면 감옥에 가나요? (형사 처벌)

A. 단순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특히 '약관 위반(라이선스 범위 초과)'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 사안이므로 경찰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3.1. 참조)

Q39. 합의금이 너무 비싼데 깎을 방법이 없나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소송보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금액(통상 낱개 가격 수준)으로 중재안을 제시해 줍니다. 폰트 업체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4.2. 참조)

Q40.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시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 전 법률 전문가나 저작권위원회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불법 복제)'인지 '민사 사안(라이선스 위반)'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Memo

Memo

펴낸날 2025년 12월
기 획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집 필 이 철 남(충남대학교)
감 수 박 지 환(법무법인 혁신)
펴낸곳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 5, 16층)
디자인 ㈜착한사람들
ISBN 978-89-6120-618-1
978-89-6120-038-7 (세트)